이사회 규정

주식회사 후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근 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의장이 정한 이사의 순으로 하며, 동급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한다. 다만, 선임된 날짜가 같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와 참석)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연간 과반이상 참석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FAX, 등기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2. 주식배당 결정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의 보수
 - 15.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승인 및 주주 총회 보고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 의장 선인 및 해임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공동대표의 결정
 -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6.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7. 경영진에 관한 규정 개폐
-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3. 준비금의 자본전입
 -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5.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6.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금전 또는 유가증권)
 - 7.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8. 자기자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차입
 - 9.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
 - 10.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 11. 자기주식 소각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타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4. 기타 볍령,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

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임)

- 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 로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 시킬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의선임배제)

과거에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 해당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법률적, 윤리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있는 자는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6조(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안건과 의사록은 본사에 보존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